발전기금 관리규정

1990. 01. 10. 최초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01. 08. 31. 부분개정 2024. 03. 01. 부분개정
2003. 06. 27. 전면개정 2025. 11. 21. 부분개정
2010. 08. 01. 전면개정 2026. 10. 19.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대학의 교육, 연구환경개선 및 장학금 등 학교 발전을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된 각종 유무형의 자산을 통칭하며, 현금·부동산·유가증권 또는 연구·업무용 물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기부금품을 통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영에 적용되며 발전기금 주관부서를 통하지 않은 기금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발전기금의 종류) 발전기금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사용 용도나 그 집행 부서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발전기금
2.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각 학과・장학금・건축비・연구비 등 사용 용도나 집행 부서를 지정하여 출연한 발전기금

제2장 위원회

제5조(위원회) 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10.19.>

②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10.19.>

③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26.10.19.>

④간사는 담당 팀/센터장으로 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3.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조(발전기금의 접수 및 관리) ①일반발전기금과 지정발전기금의 접수는 기획처에서 관장하며, 기금 관리는 사무처에서 담당한다.<개정 2024.03.01., 2025.11.21.>

②수증물품은 기획처와 소관부서가 상호 협의하여 인수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정한다. 수증물품의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24.03.01., 2025.11.21.>

③부동산의 수증은 기획처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는 법인에 의뢰한다.<개정 2024.03.01., 2025.11.21.>

④부동산의 자산평가는 공시지가 및 건물 공시가격으로 한다.(단, 매매시에는 매매실거래가로 한다.)

제11조<삭제 2026.10.19.>

제12조(회계처리 및 영수증 발급) ①모든 기금은 본 대학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회계처리 및 자산등재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③기획처장은 입금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기금 출연자에 대하여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03.01., 2025.11.21.>

제4장 기부자 및 유치자에 대한 예우

제13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대학은 기금 출연자에 대하여 출연자의 고귀한 뜻과 의미를 기리기 위하여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유치자에 대한 보상) 발전기금 유치에 직접 관여하여 일정액 이상의 기금을 유치한 자에게 유치실적에 따라(표창 및 공로금 지급, 인사고과 반영 등) 다양한 보상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1990. 9. 1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 이 규정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전 수입된 위탁수익 및 시설부대 사용료 등은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모금된 것으로 본다.
④(시행일) 이 규정은 2003. 6. 27부터 시행한다.
⑤(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